

[일련번호 : 95]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반환금 반납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환 해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에서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자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2. 폐지 승인 시
3. 회계연도 종료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 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약정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내에 반납하지 않아 2023년 보조금반환금 총 31,035,43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보조금반환금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해당 연도에 반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익년도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자 약 138,890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조금반환금 반납 소홀 내역

| 연번 | 예산편성 연도 | 적요 | 편성액(원) | 부적정 내역 |
|----|---------|--|-------------|---|
| 1 | 2023년 | 2021년 신정교 하부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국비) | 2,560,600 | - 2023년 추경예산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하였으나 연내 미반납 - 2024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반납, 이에 따른 지연반납으로 이자 추가발생 *이자 52,400원 추가발생 |
| 2 | 2023년 | 2021년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시비) | 4,980,660 | - 2023년 추경예산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하였으나 연내 미반납 - 2024년 예산 과소편성에 따른 집행잔액만 반납(이자반납 미실시) - 2025년에 이자반납(집행잔액을 24년 기반납하여 이자는 그후 미발생) |
| 3 | 2023년 | 2021년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재조성 사업 발생이자(시비) | 22,462,760 | - 2023년 추경예산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하였으나 연내 미반납 - 2024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반납 *해당 건 이자는 사업기간(21.3.~22.12.) 중 발생한 것으로, 22.12.이후 이자 미발생 |
| 4 | 2024년 | 2022년 안양천 테니스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4,060,840 | - 2024년 보조금반환금 과소편성에 따른 연내 미반납 - 2025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반납하여 이자 추가 발생 *‘25.10.28. 반납 시 이자 3,973,570원 (‘24.10.28. 반납 시 이자 3,887,080원으로 약 86,490원 이자 추가 발생) |
| 5 | 2025년 | 안양천 목동교 하부 MZ스포츠플라자 조성사업 | 172,234,720 | - 2025년 보조금반환금 과소편성에 따른 연내 미반납 - 우리구 금고 이율 착오산정에 따른 2025년 추경예산 과소편성(△14,299,610원) 편성액 일부(11,095,840원) 불용시킨 후, 2026년 추경예산으로 이자 반납 예정 (원금 기반납으로, 이자는 그후 미발생)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 정산·반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